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[별표]
 주거용건축물의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
 (조례 제18조 관련)
 (단위 : 퍼센트)

용도별 구분	주 거 용	비 고
특례건축 물	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 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 주택	80
특례제한 건축물	연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 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인 공동주택	70
	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 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공 동주택	60

별지 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다만, 제2조·제8조·제8조의2·제10조·제11조
 ·제14조제2항·제17조·제18조(별표)·제19조
 ·제21조·제21조의2·제25조 및 제32조의 개정
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 ②(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)
 이 조례 시행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
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
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·신고를
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
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
 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 관한
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
 번호 497

제출년월일 : 1999년 12월 18일
 제 안 자 : 교통위원회위원장

1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하였던
 교통순시원제도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시
 행령 제69조의 규정이 1997.12.6. 삭제됨에
 따라 동 조례의 존치실익이 상실되어 이를
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9조(1997.
 12.6. 삭제)
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서울특별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 관한
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 관한 조
 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국아파트재건축사업전면중단과공원조성및
 인접도로확장을위한청원 심사보고서

의안
 번호 29

1999. 12. 28
 도시관리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청원일자 및 청원자 : 1999년 12월 22일, 박
 병진외 216명
 ○소개의원 : 김성환의원(국민회의)
 ○회부일자 : 1999년 12월 22일
 ○상정일자
 -제17회 정기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
 (1999년 12월 22일) 의결·상정

2. 청원요지

- 청원인들은 5년이상 방치되어 있던 부국연
 립주택을 평소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에 재
 건축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세부내역을 확